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 (규칙 제136조의13제1항 관련) <개정 2011.9.3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기 호 :)

(1면) 후보자 정보

- 대통령선거 :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후보자정보를 기재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학력, 경력을 기재합니다.

(2면)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정견·공약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공약,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 1. 출력된 원고와 그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면에 게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2면에 연이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나)] (규칙 제136조의13제2항 관련) <개정 2021. 10. 22.>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 ◆ 이 자료는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4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원고에 의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순서)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 ◆ 다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자료의 1면은 해당 정당·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였고, 2면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 1. 정당·후보자가 정보자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원고서식 중 1면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하며, 2면은 “정당·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로 작성한다.
2. 정당·후보자별 정보자료는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라 첨부한다.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주민등록지·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세대주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국외부재자 <input type="checkbox"/> 재외선거인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국적확인서류 사본 부

년 월 일
신고자 _____인

_____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주소지가 없는 사람 중 최종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2. "국적확인서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을 위하여 공고한 서류를 말합니다.
3.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재외선거인이 국적확인서류 원본(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포함)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귀국투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허위로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